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70
----------	------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12.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2) 위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3) 규모 :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917.1㎡)
- (4)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 (5)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6)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7) 출연금액(안) : 285,660천원
 - 인건비 151,360천원, 임차료 85,600천원, 운영비 48,700천원
- (8)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부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조치 : 2022 회계연도 예산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4자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2017회계연도부터 운영비의 20%를 출연금으로 교부¹⁾하고 있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1년 5월 27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舊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개관에 따라 동 시설의 1~3층(전용 1,917.1㎡)를 사용하게 되면서²⁾ 이를 소관하고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에 매년 임차료 8천6백만원을 지급할 예정³⁾이며, 기존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할 때와는 달리 전용 면적의 증가, 시설 증대 및 인력 확대에 따른 운영료의 증가로 세출예산 확대에 영향을 미쳤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안)
총 운영비	421,625	433,435	438,690	843,500	1,452,300	1,428,300
서울시 출연금 (증감액)	84,325	86,687 (2,362)	87,738 (1,051)	159,388 (71,650)	286,689 (127,301)	285,660 (△1,029)
비 고	보조금 편성	출연금 편성		센터 이전 (’20.11.)	성북미디어 문화마루 개관 (2021.5.27.)	

1) 2016회계연도에는 센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방송법」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제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2017회계연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교부 중임.

2)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의 준공은 2020년 8월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11월에 이전을 완료함.

3)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2020년까지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을 임차하였으며, 연간 임차료는 931만원이었음.

이에 따라 2022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총 14억 2천8백만원이며, 20%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2억 8천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동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 미디어 랩4)’의 민간위탁도 맡고 있는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강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서울 미디어 랩 연계사업목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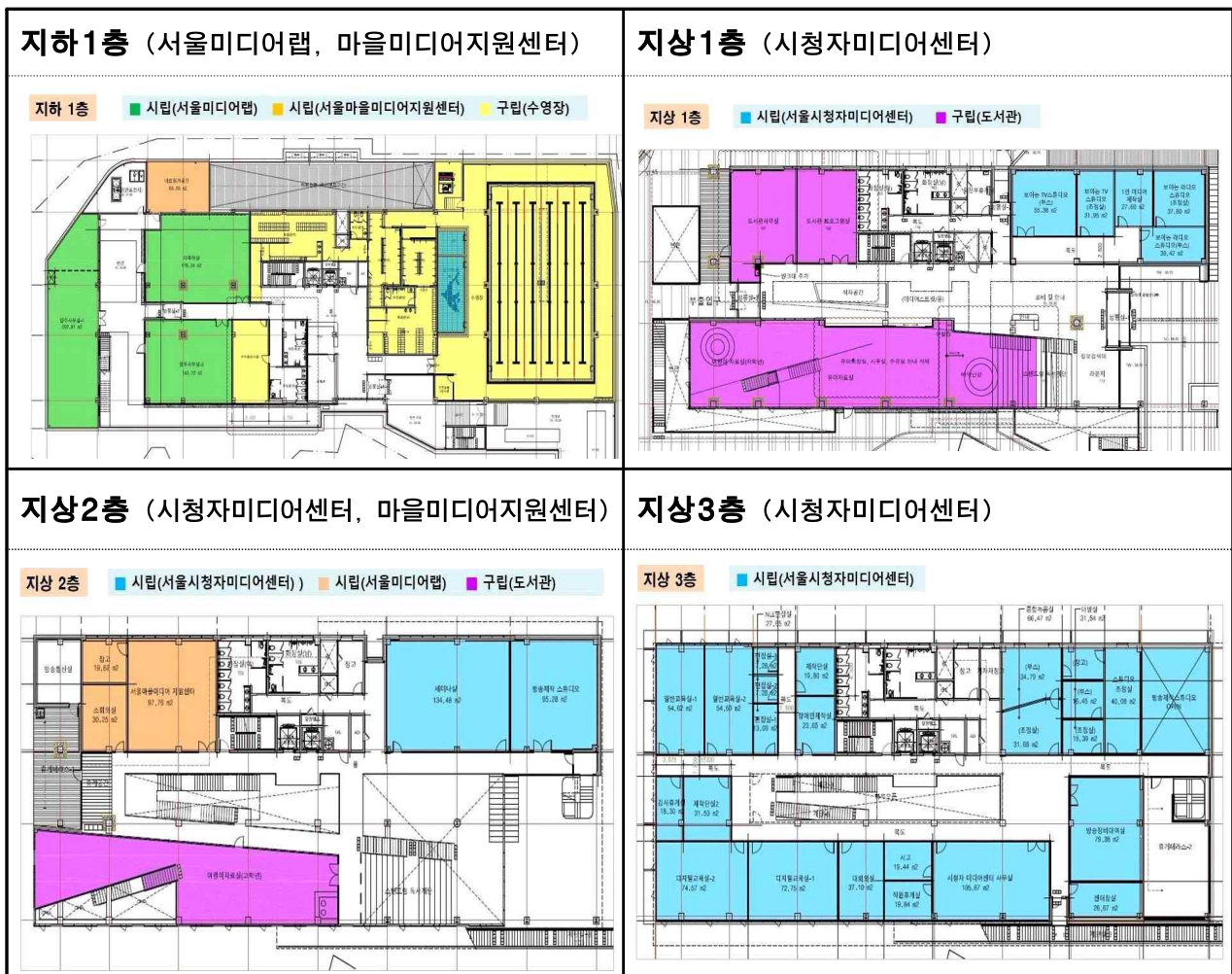
연 번	사 업 명	사업내용(참가업체)									
1	시제품 공동기획	청각장애인 민원처리를 위한 수어통역 단말기 ‘손말, 데스크’ 개발 (㈜함께걷는미디어랩)									
2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TBS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실버넷티비)									
3	미디어 교육강좌 개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강좌(디지털미디어코딩, 웹드라마제작, 아나운서스피치) 개설 (소셜감성, 크랭크인, 찬스웨이브)									
4	K-테스트베드 구축·운영 (3,4분기 예정)	- 서울센터 시설, 장비를 활용한 입주기업 시제품 테스트베드 설치 및 테스트 지원 ※ 설치장소 :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미디어체험관(1층)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제품명</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손말.데스크</td> <td>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td> <td>청각장애인 민원 처리</td> </tr> <tr> <td>액션박스</td> <td>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td> <td>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td> </tr> </tbody> </table>	시제품명	내 용	비 고	손말.데스크	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	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액션박스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	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
		시제품명	내 용	비 고							
손말.데스크	수어통역 단말기(주)함께걷는 미디어랩)	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액션박스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기반 실감형 체험교육 단말기 (믹스비전(주))	화재예방 등 기관 교육 활용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입주한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의 활용방안에 대해 서울 미디어 랩, 마을미

4)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스타트업과 미디어 관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를 통한 3년 미만의 미디어 교육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로 민간위탁이 확정되었음.

디어의 시설과 기능의 중복·유사성, 차별점을 감안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온 바, 2021년 7월 19일 문화본부 소관이었던 ‘서울 미디어 랩’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었음.

〈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배치도 〉



상기 사업들은 비록 물리적인 소관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통합되었을 지라도 향후 연계사업의 개발은 효율성의 제고로 서울성북미디어문화 마루의 활용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서울시 전체 실국의 미디어 관련 사업 담당자의 교육 등 시 전체 사업의 미디어 활용도를 높임으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가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70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나. 위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다. 규모 :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917.1㎡)
- 라.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 마.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 285,660천원

- 인건비 151,360천원, 임차료 85,600천원, 운영비 48,700천원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부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강이랑(☎2133-6440)